

연구용역 시행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민간투자학회(이하 학회) 명의의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수행 및 발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절차)

1. 학회명의 연구용역 수행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.

1) 외부 입찰을 통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:

- ① 학회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, 기관은 학회에 연구용역 개요, 연구진, 연구비, 기타 특수한 사항이 기재된 간략한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(별표 1)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회장, 수석부회장, 학술부회장, 편집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여부 및 연구책임자를 최종 결정한다.
- ③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 접수 시, 사안에 따라, 회원공지를 통해 추가로 수행 의사가 있는 회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
- ④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가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의 협의, 조정, 평가 등을 통해 연구진을 결정한다.

2) 학회로 연구용역이 의뢰된 경우:

- ① 공문 또는 구두의뢰 접수 후, 회원에게 공고 후 2조 1항 1)호 ①의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(별표1)를 학회로 접수 받는다.
- ② 회장, 수석부회장, 학술부회장, 편집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를 접수한 자 중에서 연구책임자를 최종 결정한다.
- ③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공문접수 전에 수행여부와 연구책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. 단, 연구진은 학회회원으로 한정하여 구성한다.

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진 구성 시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해당 연구에 참여의향이 있는 회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진 모집공고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2. 학회명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회원, 기관은 학회에 2조 1항 1)호 ①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용역 발주 의향서(별표2)를 학회로 제출하고, 회장, 수석부회장, 학술부회장, 편집위원장의 검토, 협의, 조정에 따라 발주를 진행하여야 한다.
3. 연구용역 수행 및 발주에 관한 확정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3조 (연구용역비의 지급)

1. 선급금 및 중도금은 발주기관에서 수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2. 준공금은 최종보고절차(최종발표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2부 학회제출)가 완료된 후 지급토록 한다.
3. 각종 연구발표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준공금에서 정산한다.
4. 학회기여금은 2조 1항 1)호(외부 입찰을 통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)의 경우 연구용역비 총액의 5%를 공제하며, 2조 1항 2)호(학회로 연구용역이 의뢰된 경우)의 학회기여금은 연구용역비 총액의 10%를 공제한다. 특별한 경우, 학회 기여금 비율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5. 연구용역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서 정한다.

부 칙

본 내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